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. 7. 2 선고 2018가단311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2019. 6. 18.

판결 선고2019. 7. 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8. 10. 28. 접수 제191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. 10. 20. 접수 제1079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는 원고와 아래 표 '신용보증일'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'신용보증한도액'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신용보증한도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표 '대출일'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'대출금융기관'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표 '대출금액'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, 원고는 같은 표 '대위변제일'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'대출금융기관'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같은 표 '대위변제금액'란 기재 각 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, 2012. 3. 12.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같은 표 '2012. 3. 12. 현재 구상채권액'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.

2004-12-29	18,680,000	2006-02-28	D 조합	15,680,000	2012-01-30	18,629,397	13,629,397	430,014	13,906,411
2004-12-29	2,520,000	2006-02-28	D 조합	2,820,000	2012-01-50	2,995,511	2,995,511	363,196	2,748,706
2006-11-17	13,500,000	2006-11-17	D 조합	13,500,000	2012-01-30	10,190,684	10,190,684	447,114	10,697,798
합계	26,115,692	1,236,523	27,561,915						

나. 원고는 2012. 3. 20.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차350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. 3. 27. 'C는 원고에게 27,351,915원 및 그중 26,115,592원에 대하여 2012. 3. 12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2. 3. 29. C에게 송달되어 2012. 4. 13.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는 2008. 10. 18.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4,000만원을 이율 연 24%, 변제기 2010. 4. 30.로 각 정하여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고, 같은 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라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. 10. 20. 접수 제107935호로 채권최고액을 5,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'이 사건 제1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위 2008. 10. 18.자 금전대여약정에 따라 2008. 10. 27. C에게 4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대여금채권'이라 한다).

바.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. 10. 28. 접수 제19172호로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'이 사건 제2근저당권'이라 하고,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총칭하여 '이 사건 각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1, 2호증, 을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바,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.

2) 피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3. 2. 4. C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.

나. 쟁점

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이다.

3. 쟁점에 관한 판단

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. 4. 16. C의 딸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추가로 2,975만 원을 대여한 사실, C는 2013. 2. 4. 딸 E 명의로 원고에게 3,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2013. 2. 4. 변제한 3,5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, 1)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. 2. 4. 채무자인 C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정희철

별지

1)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0. 4. 30.이고, 2010. 4. 16. 추가로
대여한 2,975만 원의 경우 따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
채권이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변제일인 2013. 2. 4.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
도래하였고, 2010. 4. 16.자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.